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대한민국정부	보 도 자 료	(배포) 2019. 11. 20.(수)
'19. 11. 21. 11:00 이후 사용 가능		
비고	* 공동배포 : 국방부, 교육부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산업부, 해수부, 중기부 * 합동브리핑 :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룸 (11. 21. 11시) * 담당부서 연락처는 붙임 1 참고	

병역이행의 공정성·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

-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
- 전문연구요원 소재·부품·장비 등 중소·중견기업 집중배치
- 예술·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

□ **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** 11월 21일(목) 08:00 정부세종청사에서 **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를 개최하여, **「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」**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* 참석 : 국무총리(주재), 국방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문체부·산업부·해수부·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, 국조실장 등

□ 정부는 '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, 지난해 12월에 **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,**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**개선 방안을 마련**하였습니다.

○ 이번 개선방안은 **'02년부터 수차례 논의**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**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** 그 의의가 있습니다.

□ 대체복무제도는 **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**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,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**병역자원 부족이 예상**됨에 따라 대체복무 **배정인원 감축**을 추진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**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·형평성 논란**과,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**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**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**제도개선도 검토**하였습니다.

○ 이와 함께 **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**할 예정이며,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**굳건한 안보태세 유지**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.

○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**24개의 과제**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**일정에 맞추어 추진**할 예정입니다.

□ **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**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**는 **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**하여, **국가산업발전**에 **전략적으로**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대체복무요원들의 **근무여건이 개선**되도록 하고, 배정인원은 **필요, 최소한으로 감축**합니다.

○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**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**라는 **공감대가 형성**되었으며, 이를 반영하여 **현 지원규모(1,000명)를 유지**하되, **복무를 강화**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단순 **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**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**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**하였으며,

•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**2년으로 줄이고**, 줄어든 **1년의 기간은** 학위 취득 후 기업·연구소 등 **연구현장에서 복무**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, 연간 1,000**명의 연구 인력**을 기업 등에 **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**되므로 **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**이 될 것입니다.

-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**'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**할 것입니다.

• 또한,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**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**를 일단위(8H)에서 **주단위(40H)로 전환**하겠습니다.

- **심야연구,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**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**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**함에 따라 **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**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,

-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**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**하는 동시에 **효율적인 연구 활동**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○ **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,500명에서 1,200명으로 300명 감축**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,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분야 **중소·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***되도록 하겠습니다.

*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·중견기업 배정인원 : 1,062명('19년) ⇨ 1,200명('20년)

•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**기존**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,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**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**될 것입니다.

• 소관부처(교육부, 과기정통부, 중기부)의 **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**하고,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* 등 **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**해 질 것입니다.

* '20년부터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,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

• 또한 중소·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**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**하여, 중소·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**유출되는 문제가 발생**하였으나, 향후에는 **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,** 중소·중견 기업에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**산업기능요원**은 현행 **4,000명에서 3,200명으로 800명 감축**하되, 특성화고 등 **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**하겠습니다.

• 신체검사 1~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, 신체검사 4급의 **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**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**배정될 수 있도록** 할 것입니다.

• 또한,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**'일자리 질' 평가***비중을 확대하여, **양호한 근무여건**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* (성과공유) 내일채움공제 가입, 우리사주제도·스톡옵션 운영,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
(근로환경) 청년친화, 노사문화우수, 인재 육성형, 클린사업장 등

-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

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**취업 지원 정책**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**승선근무예비역**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**현행 1,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.**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**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**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,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**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**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**적시에 신고·상담을 할 수 있도록** 하겠습니다.

○ 석사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%인 **1,300명을 5년('22~'26년)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**할 예정입니다.

<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(명)>

구 분	계	전문연구요원		산업기능요원	승선근무예비역
		석사	박사		
현 행	7,500	1,500	1,000	4,000	1,000
조 정	6,200	1,200	1,000	3,200	800
감축규모	**1,300**	**300**	-	**800**	**200**

□ **예술·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**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**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,** 병역의무 이행의 **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**하였습니다.

○ 먼저, 예술·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, **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**하였습니다.

- **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**들이 엄격한 **선발기준**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**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**할 뿐 아니라 **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**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**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**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- 또한,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·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**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** 제도를 **유지**해야 한다는 **여론을 고려**하였습니다.

 *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%~66% ('19. 7월 일반국민·현역장병 조사 결과)
 *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 (한·일 월드컵, WBC)

- 다만,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**대중문화예술 분야로** 예술요원 편입범위 **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**에 대해서는,

 전반적인 대체복무 **감축기조**, 병역의무 이행의 **공정성·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**과 맞지 않아 **검토에서 제외**하였습니다.

○ **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**하여 기존 **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**할 것이며, **1개** 대회는 **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**하고 **2개** 대회는 수상자 **편입자격요건을 강화**할 것입니다.

현 행			조 정	결 과
국제 예술 대회	해외개최	**35개 대회**	기준미달, 운영미흡 대회 제외 (4개)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 (2개)	**31개 대회** (2개 대회 기준 강화)
	국내개최	**6개 대회**	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	**5개 대회**
국내(전통) 예술대회		**7개 대회**	연극, 미술대회 제외 (2개)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(1개)	**5개 대회** (1개 대회 부문 축소)

-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,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**4개 해외 대회**는 편입인정대회에서 **제외**할 것이며,

-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**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**,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**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**도 편입인정대회에서 **제외**할 것입니다.

- 또한 **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***되는 문제를

해결하기 위해,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**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****하고,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**추천 기준(악기별 10개 ⇨ 부문별 3개)을 통합**하여 편입 부문별·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,

*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%가 편입됨.
**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/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

-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**발레 2개 대회**에서의 편입은 **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**하도록 할 것입니다.

-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**자문위원회를 통해**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**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**해 나갈 것이며, **운영 비리** 등으로 처벌을 받은 **국내 대회는 제외**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.

○ **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**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**현행대로 유지**하되, 단체종목 등의 **선수 선발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**하겠습니다.

- **아시안게임**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,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**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**가 크고, **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**을 고려하여 **편입인정대회로 유지**합니다.

- 다만 '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'에 **선발방식, 절차,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**하고,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**기준·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**하는 등 **선발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을 대폭 강화**하겠습니다.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- 이러한 **선발과정 공정성·투명성 강화**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**'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*'을 삭제**합니다.

 - 이는 **후보 선수라 하더라도**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**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**할 것이며,

 -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**불필요한 교체 출전** 등으로 우리의 **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** 하겠습니다.

*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,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

○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**성실 복무를 유도**하기 위해 예술·체육요원의 **복무 방식을 개선**합니다.

- 예술·체육요원의 특기활용 **'봉사활동'**은 **복무가 아닌,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**되는 문제가 있어,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**'공익복무'로 명칭을 변경**하겠습니다.

- 또한, 예술·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**사전에 지정하는 도서·벽지소재 학교, 특수학교, 소년원,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**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**복무관리를 강화**하고, 특히,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**제재가 강화**됩니다.

- 공익복무(봉사활동)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'주의' 처분하던 것을 **'경고' 처분으로 강화**하는 한편,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(봉사활동) 시간을 **2배 연장**하여 제재의 **실효성을 강화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**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** 하고, **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**까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**재편입을 금지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(봉사활동)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, **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**하는 등 공익복무(봉사활동)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□ **공공분야 대체복무**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, 인위적 배정인원 **감축은 하지 않으며,** 공중보건의사 **제도를 일부 보완**하겠습니다.

○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*인 **공중보건의사, 공익법무관은**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, 향후 **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**할 것이며,

* '19년 배정인원 : 공중보건의사(1,489명), 공익법무관(130명)

○ **공중방역수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**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, **현 배정인원을 유지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'19년 배정인원 : 공중방역수의사(150명)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(54명)

○ 다만,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**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**를 위해 "의무사관후보생"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**'의무사관후보생'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**고,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**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**이나,

- **'의무사관후보생'에**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, **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**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.

* '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,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

□ **모든 대체복무**에 대하여 **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**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,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**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**"병역부조리센터"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**하며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을 통해 관련 **신고자를 보호**하고, **포상금도 지급**할 수 있게 하는 등 **신고 활성화**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,

○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, 가혹행위 등의 **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**받을 수 있도록 "**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**"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.

○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**기초군사훈련 시**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**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「군인보수법」을 개정**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**병역자원을 확보**하고, 국가 인적자원의 **효율적 활용**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**형평성을 제고**하겠으며,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**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**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**형평성 있게 운영**되고 있으며, 대체복무제도가 **국가적인 기여**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**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**하겠습니다. 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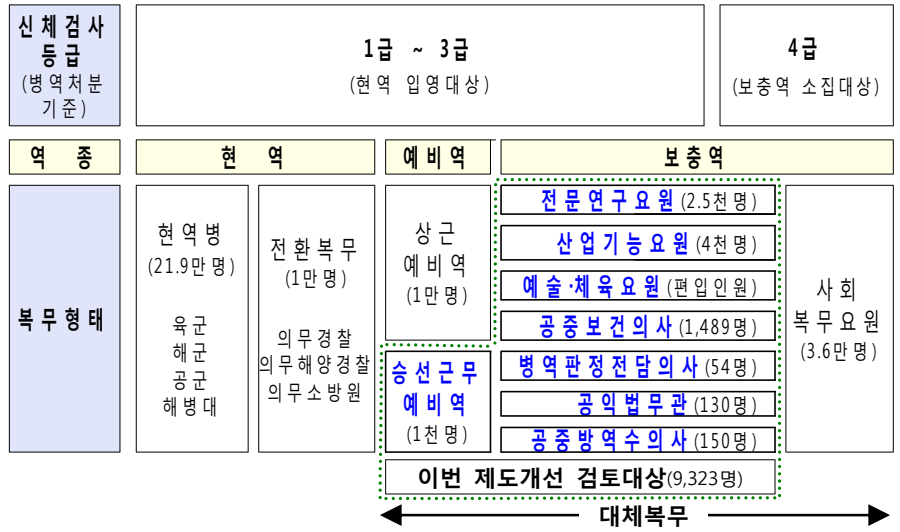
참고 1 소관부서 연락처

소관부서 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	과장 김숙진, 사무관 송나래 (044-200-2465, 2480)
	국방부 인력정책과	과장 이인구, 중령 장석용, 주무관 김윤희 (02-748-5130, 5135, 5138)
	교육부 학술진흥과	과장 윤소영, 사무관 권지은 (044-203-6604, 6871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	과장 허재용, 사무관 손지민 (044-202-4830, 4835)
	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과장 윤태욱, 사무관 김미영 (044-203-2731, 2740)
	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과장 강수상, 사무관 최계원 (044-203-3111, 312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과장 나성화, 사무관 안진호 (044-203-4220, 4223)
	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	과장 이종호, 사무관 임진영 (044-200-5740, 5743)
	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	과장 김민규, 사무관 김종길 (042-481-4464, 4369)
	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	과장 손진길, 사무관 정재숙 (042-481-3002, 3006)
	병무청 산업지원과	과장 박용준, 사무관 김연진 (042-481-2764, 2772)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참고 2 병역 대체복무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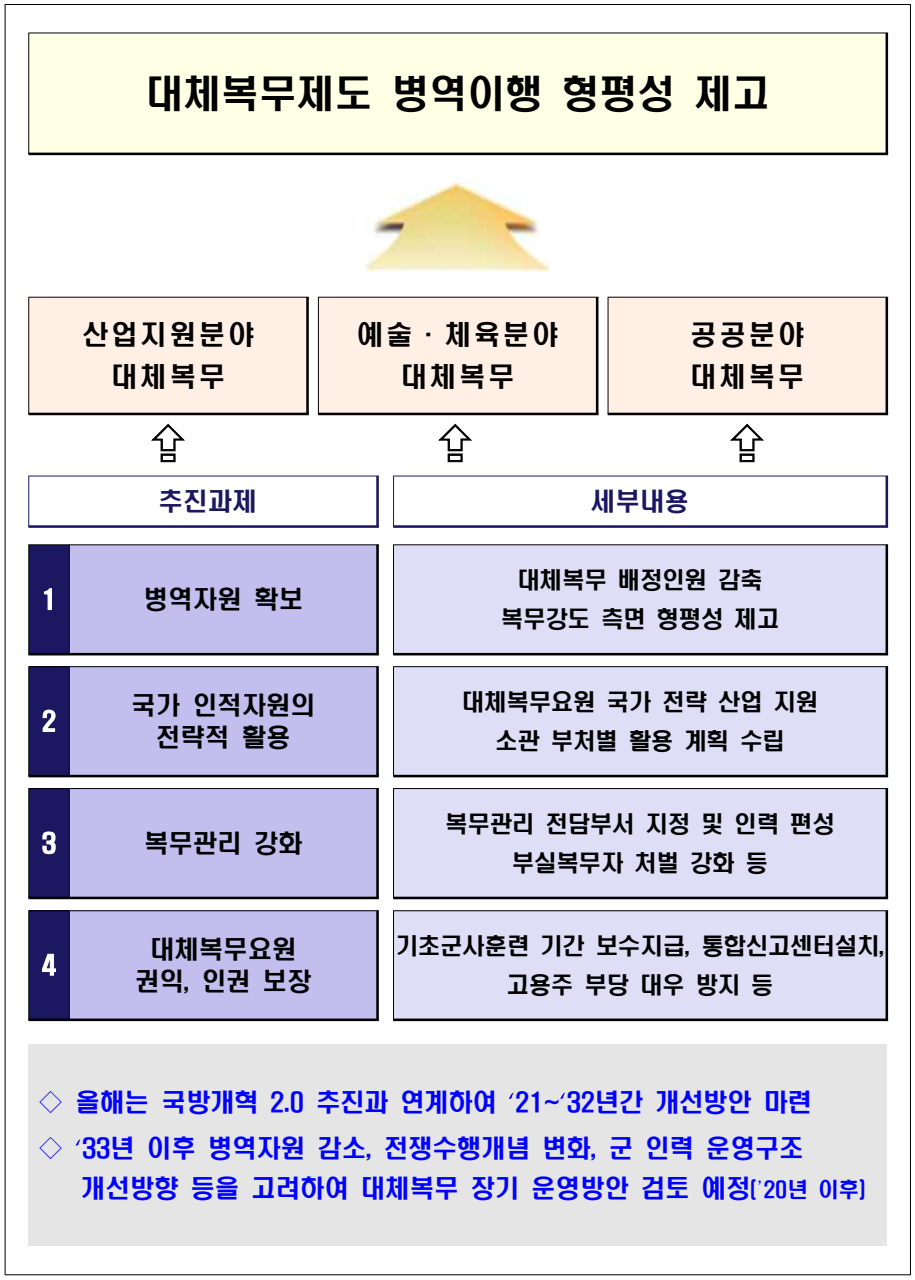
('19년 배정인원 기준)



- **(전문연구요원)** 과학기술 인재 양성·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복무
- **(산업기능요원)** 특성화고 등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,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
- **(승선근무예비역)** 항해사 및 기관사 등 선박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, 해운업계의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
- **(예술·체육요원)**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원을 선발하여 관련분야 복무 중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
- **(공중보건의사)**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
- **(병역판정전담의사)**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병무청에 소속되어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전담하는 업무에 종사
- **(공익법무관)**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원을 3년간 법률 구조업무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법률 사무업무에 종사
- **(공중방역수의사)** 수의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3년간 가축 전염병 예방 등 공공목적의 방역업무에 종사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참고 3 병역 대체복무 개선 추진 개념

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참고 4 분야별 추진과제

○ **총 24개 제도 개선 과제** (법률개정 8건, 시행령개정 9건 등)

○ **개정 필요 법률 : 병역법, 공익신고자보호법, 군인보수법**

추 진 과 제		소관 부처	조 치 사 항	일 정
1. 산업지원분야 개선				
[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]				
1	배정인원 감축	국방부 병무청	병무청,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시달	'22 ~ '26
2	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규모 조정에 따른 간부 증원	국방부 기재부	부대 중기계획 수립	'20.하
3	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개선	국방부 병무청	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	'20.하
[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제고]				
4	석사 전문연구요원의 기업체 지원 확대(기타연구기관 감축)	국방부 병무청	병무청, 인원배정 계획	'19.하~
5	석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도 개선	국방부 병무청	병역법시행령 개정	'20.하~
6	소재·부품·장비 관련업체 지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확대	국방부 병무청	병무청,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	'20.상~
7	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조정	국방부 병무청	병무청,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	'21.상~
8	대체복무 운영 소관부처 역할 강화	국방부 병무청	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	'20.하~
[복무관리 및 복무 부실자 처벌 강화]				
9	복무 부실인원 처벌규정 강화	국방부 병무청	병역법 개정	'20.하~
[대체복무요원의 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]				
10	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유연복무 제도 시행	병무청	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	'20.하~
11	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강화	병무청 중기부	병무청,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	'21.상~
12	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	해수부 병무청	병무청,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	'20.상~

추 진 과 제		소관 부처	조 치 사 항	일 정
2. 예술 · 체육분야 개선				
[예술 · 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]				
13	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정비	병무청 문체부	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	'20.하~
14	국가대표 선발 공정, 투명성 강화	문체부	대한체육회,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	'20.상~
15	단체종목 실제경기 출전자만 편입 인정하는 조항 삭제	국방부 병무청	병역법시행령, 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	'20.하
[복무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]				
16	복무강화를 위한 공익복무 변경	국방부 병무청 문체부	병역법 및 시행령, 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, 예술·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	'20.하~
17	공익복무기관 사전 지정 및 공익복무 사전승인 절차 도입	병무청 문체부	병역법시행령, 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, 예술·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	'20.하~
18	부실복무자 제재 강화	국방부 병무청 문체부	병역법 및 시행령, 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, 예술·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	'20.하~
19	담당자 주기적 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전담직원 운영	병무청	예술·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	'20.하~
3. 공공 분야				
20	자연감소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정	국방부 병무청	병무청, 필요인원 협의시 반영	'20.하~
21	공중보건의사 편입체계 개선	국방부 보건부	병역법 및 시행령, 의무·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	'20.하~
4. 전 분야 공통사항				
22	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 확대	국방부 병무청	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	'20.하~
23	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군사훈련 기간 보수 지급	국방부 기재부	군인보수법 개정	'20.하~
24	'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' 설치	병무청	병무청 세부추진계획 수립/추진	'20.하~

엠바고 : 11.21.(목) 11:00

참고 5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

(범례 : 적색 - 제외, 녹색 - 조정)

구 분			대회명	개최국가	최근 4년간 편입인원	조정결과(사유)
국제예술대회	해외개최 18명	1	"Jean Sibelius" 국제바이올린콩쿠르	핀란드	-	
		2	"Henryk Wieniawaski" 국제바이올린콩쿠르	폴란드	-	
		3	"Frederick Chopin" 국제피아노콩쿠르	폴란드	-	
		4	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	미국	-	
		5	"pablo Casals" 국제첼로콩쿠르	미국	-	제외(국제연맹 탈퇴, 자격미달)
		6	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	미국	-	
		7	하노버 "Joseph Joachim" 국제바이올린콩쿠르	독일	-	
		8	"Max Rostal" 국제비올라,바이올린콩쿠르	독일	-	
		9	"Franz Liszt" 국제피아노콩쿠르	네덜란드	1명	
		10	"Géza Anda" 국제피아노콩쿠르	스위스	-	
		11	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	일본	-	
		12	"Premio Paganini" 국제바이올린콩쿠르	이탈리아	-	
		13	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	프랑스	2명	
		14	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	이탈리아	1명	
		15	"Long-Thibauds" 국제피아노,바이올린콩쿠르	프랑스	-	
		16	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	프랑스	-	
		17	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	프랑스	-	
		18	뮌헨 국제음악콩쿠르	독일	3명	
		19	"Reine Elisabeth de Belgique" 국제음악콩쿠르	벨기에	-	
		20	Geneva 국제음악콩쿠르	스위스	-	
		21	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	체코	5명	
		22	"Carl Nielsen" 국제음악콩쿠르	덴마크	-	
		23	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	러시아	-	
		24	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	캐나다	-	
		25	"Michele Pittaluga"국제클래식기타&작곡콩쿠르	이탈리아	1명	
		26	"Dr.Luis Sigall"국제음악콩쿠르	칠레	-	
		27	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	핀란드	1명	제외(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)
		28	USA 국제발레콩쿠르	미국	-	
		29	뉴욕 국제발레콩쿠르	미국	-	제외(장기간 대회 미개최)
		30	모스코바 국제발레콩쿠르 & 안무콘테스트	러시아	-	
		31	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	헝가리	-	제외(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)
		32	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	러시아	1명	
		33	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	불가리아	-	
		34	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	스위스	-	조정(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)
		35	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	미국	3명	조정(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)
	국내개최 29명	1	윤이상콩쿠르		1명	
		2	서울국제음악콩쿠르		2명	
		3	제주국제관악콩쿠르		2명	
		4	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		5명	
		5	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		8명	2개 대회 중 1개 제외
		6	서울국제무용콩쿠르		11명	(1,2위 수상자 전원 한국인)
전통예술대회	국내개최 47명	1	온나라국악경연대회		9명	
		2	동아국악콩쿠르		14명	조정(악기별 → 부문별 추천)
		3	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		9명	
		4	전국 연극제		-	제외(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)
		5	대한민국 미술대전		-	제외(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)
		6	동아무용콩쿠르		7명	
		7	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		8명	